

## Client Alert

March 2019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십시오:

### Adeline Wong

파트너 변호사  
+603 2298 7880  
adeline.wong@wongpartners.com

### Jason Liang

파트너 변호사  
+603 2298 7983  
jason.liang@wongpartners.com

### Kellie Allison Yap

변호사  
+603 2298 7923  
kellieallison.yap@wongpartners.com

### Anlynn Ng

변호사  
+603 2298 7931  
anlynn.ng@wongpartners.com

### 기소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 이전가격 과세 불복청구 사건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랜드마크 사례

### 도입

Wong & Partners 는 최근 소득세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 "SCIT")에서 다뤄진 과세 불복청구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SCIT 에서 다룬 이슈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납세자들과 말레이시아 국세청(Malaysian Inland Revenue Board, "IRB")이 오래동안 다뤄온 이전가격의 주요 쟁점들을 포함하는 바,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향후 말레이시아의 이전가격 감사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RB 는 최근 몇 년 간 이전가격 분야와 관련된 이슈들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왔고, 이전가격 감사 수행 시 IRB 가 종종 취하는 공격적인 태도는 납세자들의 이전가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전가격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분쟁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던 바, 이전가격과 관련된 법은 상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분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IRB 는 이전가격 감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전가격 원칙들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겼고, 이런 혼란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해 왔습니다.

### 사실관계

납세자는 소비재를 취급하는 다국적기업의 말레이시아 자회사로서, 국외특수관계자의 말레이시아 내 제품 유통 관리를 담당하는 "제한된 위험만을 부담하는 유통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자에게 공급하는 제품들의 판매가는 정상가격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는 것으로 양 자간 협의되었습니다. 마진의 계산은 비교가능한 제 3 자 유통업자의 판매 결과를 근간으로, 납세자가 매출액 수익율(Return on Sales, "RoS")을 제공함으로써 계산되었습니다.

이전가격 감사 수행 후, IRB 는 납세자의 이전가격 분석과 이전가격 서류들로 제출된 상세한 이전가격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소득세법 1967 의 권한을 행사하여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들을 조정했습니다. IRB 는 납세자의 기능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가 제한된 위험만을 부담하는

유통업자라는 것은 잘못 해석된 것이므로 납세자는 더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IRB 는 납세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기업군을 거부하고, 임의로 5 개의 비교대상기업군을 선정하였으며, 비교대상기업군의 실제 결과들이 정상가격범위 혹은 사분위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대신 비교대상기업군의 정상가격들의 중앙값으로 이전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안의 다툼에서 납세자 승소를 이끌어 낸 주요 이전가격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주요 이전가격 쟁점들**

#### **1. 올바른 접근을 위해 사분위범위 사용**

본 사안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이전가격 조정의 산출방법으로 비교대상기업군/거래의 정상가격의 중앙값을 사용해 온 IRB 오랜 관행에 대해 다투는 부분이었습니다.

납세자는 정상가격 범위는 특수관계거래의 조건들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OECD 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IRB 는 거래가가 비교대상기업군/거래의 사분위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1967 를 근거로 IRB 는 거래가를 중앙값으로 조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2. FAR 분석과 조정에 대한 재구성**

납세자는 IRB 가 거래에서 정상가격 특징을 분석함에 있어 과세자에 기능에 과도하게 집중했고, 사용되는 자산 및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마땅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널리 통용되는 이전가격 원칙 및 산출법에 따르면, 기업의 적절한 기능 분석은 당사자들의 기능, 사용되는 자산 및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Functions, Assets and Risks, "FAR")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도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IRB 가 수행한 FAR 분석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IRB 가 납세자의 특성을 판단하는 데 택한 방법은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OECD 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IRB 는 납세자의 기능을 유통계약서들을 근간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납세자의 사용되는 자산 및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경중을 고려하여 유통 거래와 관련한 납세자의 특성을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IRB 는 납세자가 수행한 특정 기능들은(즉,

광고 및 홍보 활동) 납세자는 제한된 위험만을 부담하는 유통업자가 아닌 통상적 유통업자(full-fledged distributor)라고 주장했습니다.

### 3. 비교대상기업군 선정

납세자는 IRB가 광고 및 홍보 활동비의 수준을 근거로 비교대상기업군을 선정했으며, 동 접근은 합리적이고 강력한 경제성 비교 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널리 통용되는 이전가격 원칙들과 산출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는 IRB가 거래가 조정을 정당화 하기위해 임의로 선정한 비교대상기업군의 실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다루었고, 납세자는 심지어 공정하고 보다 정확한 비교를 가능하게하는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정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으나 IRB는 거부했습니다.

IRB는 통합적인 이전가격 분석이 불필요하며 IRB가 현장감사를 통해 진행하는 "work analysis"은 과세 조정의 근거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납세자가 제안한 운전자본 조정은 "복잡한 대수(complex algebra)"를 포함하며, "...복잡한 대수는 일반적으로 그 복잡함을 감수하며 시도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대수를 통해 유출된 결과물인 과세 조정은 신뢰할 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비교가능성 분석은 OECD 이전가격 원칙과 상세한 가이드라인에서 합리적인 적용 방법으로 소개된 널리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 4. 이전가격 과세 조정의 공제 가능 여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맺은 유통계약서에 마진(RoS)은 사전 협의된 수준으로 유지하는 메카니즘을 포함하되, 거래 기간에 따라 거래가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거래가는 체결된 유통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조정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납세자의 순이익이 정상가격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에 보조금(grants)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금액은 결국 소득세법 1967에 의거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역으로, 납세자의 순이익이 정상가격 마진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는 보조금 메카니즘을 통해 보상되었고 과세되었습니다. 동 조정은 "true-up / true-down"으로 널리 알려진 조정 방식입니다.

IRB는 소득 생산을 위해 독점적이고 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동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납세자는 이에 true-up / true-down 조정은 마진이

정상가격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외 다른 목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또한 조정을 통한 지급과 수급은 오로지 유통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SCIT 의 판결**

2019 년 1 월 25 일에 SCIT 는 납세자의 주장에 동의하여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다툼 모든 이슈들에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SCIT 의 판결은 IRB 가 오래 고수해 온 관행, 즉, FAR 분석에서 과도하게 특수거래관계자들의 기능에 집중하여 판단, 거래가를 중앙값으로 조정하는 고집, 이전가격 조정 전 적절한 이전가격 분석을 실행하지 않는 관행들을 성공적으로 다투어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동 판결은 널리 통용되는 이전가격 원칙들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또한, 동 판결은 이전가격 감사와 과세 불복 조세쟁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여 기업은 충분히 방어적인 이전가격 서류들을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판결입니다.

\*\*\*\*\*

Wong & Partners 의 조세법무팀은 말레이시아 세법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세무 이슈들에 대한 자문, 조세쟁송에서 기업을 대리, 이전가격에 대한 준수 지원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기업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http://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